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회사 등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입찰하는 소위 ‘벌떼입찰’ 방지를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계열회사의 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추첨에 참여 가능한 계열회사 수 제한 근거 신설(제24조제5항)

공공주택사업자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 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)에 속하는 회사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, 제8항(중전의 제7항)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항(중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5항”을 각각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-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일 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)에 속하는 회사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 
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 
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  
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 
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  
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 
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제  
4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  
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제5항  
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 
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8. (생략)

⑨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제6항-  
-----  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441